
Policy and Law Report _Vol.13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4.25.~ 2022.05.01) -

May 2,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혁신창업·벤처기업 등이 모여 벤처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함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투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태펀드 투자 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 제언 다양하게 제시 - 모태펀드가 민간에서 소외되기 쉬운 벤처투자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투자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펀드 출자 및 벤처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다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② 우리 경제와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을 제고함에 있어 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성장기반인 벤처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중요 - 민간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벤처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함 기획재정부의 향후 벤처투자 정책 방향은 아래 3대 방향에 중점을 두어 모태펀드를 통한 공공 부문의 벤처투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임 ① 모태펀드 회수재원 선순환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② 여타 창업·벤처 투자자금과의 연계 강화 - 「창업 초기→데스벨리→스케일업」등 각 성장단계별 순차적(시리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여타 정책펀드,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연계 ③ 투자 사각지대 해소 등	2022-04-22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과 他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 -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他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 ② 산업 데이터 가치 산정 및 대가 제공 방식 -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 구매수요, 시장유형(완전경쟁, 과점, 독점) 등을 고려한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방법* 및 대가 제공방식**에 대해 상세 기술 * 원가 접근법(데이터 생성 원가), 시장 접근법(유사 거래 실적), 수익 접근법(미래 예상 소득) ** 정액제(이용량에 관계 없이 금액 고정), 종량제(이용량에 따라 금액 산정), 혼합방식 ③ 산업 데이터 계약의 유형 - 데이터 생성·거래·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쟁점사항(이용권한, 이익배분, 영업비밀 등)을 상세 기술 * 데이터 제공형: 보유 중인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양도, 이용허락 등)하는 경우 데이터 창출형: 복수 당사자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 플랫폼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 입법 동향에 대한 대응으로는 ①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②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③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 논의	2022-04-22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쉼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함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주요 심의안건 중 실증특례 14건은 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 ②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③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쉼터 ④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⑤~⑥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⑦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⑧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⑨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⑩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⑪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⑫ 자율주행 배송로봇 ⑬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⑭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임시허가 2건은 ⑮~⑯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022-04-29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 기술개발 단계부터 허가심사까지 신속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품화전략지원단'이 출범한다고 밝힘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단장으로 제품화지원팀, 혁신제품심사팀, 임상심사팀으로 구성되며 총 90명(공무원 35명, 심사원 5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원대상 제품) 공공성이 높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희귀의약품'이나,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내 개발 신약', '혁신의료기기', '신기능성 식품 원료'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 ② (제품화지원팀)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R&D 등에 대해서도 개발된 기술과 현행 규제 간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원 - 인허가 심사자료 준비가 어려운 신기술·신개념 제품에 대해서는 각 심사부서와 연계해 규제 서비스를 제공 - 「약사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상담 결과가 필요한 경우 의료제품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방식의 상담 결과 제공 ③ (혁신제품심사팀) 신속심사 대상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지정하고, 최종 개발된 제품의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동반심사*' 프로그램 운영 * 유망한 치료제에 대해 최종 허가단계가 아닌 임상 등 진행단계 중간마다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Rolling Review) ④ (임상심사팀) 비임상·임상자료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심사하고, 제품화지원팀의 개발 상담과 연계해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평가변수 설정, 대상 환자 선정 등) 상세설계 지원	2022-04-25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2.4.27. 시행)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료원료인 겔보리와 밀기울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각각 '40,000톤'에서 '250,000톤', '30,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칩용 감자'에 대해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제조용 가스인 '네온, 크립톤, 크세논', 이차전지 양극 집전체 제조용 '알루미늄 판'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022-04-27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5.1. 시행)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022-04-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u>「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5.1. 시행)</u>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022-04-27
산업통상자원부	• <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5.1. 시행)</u>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2,283원에서 43,6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2022-04-27
환경부	• <u>「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0.26. 시행 예정)</u>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중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류에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시 경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2-04-25
	• <u>「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4.30. 시행 예정)</u>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여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함	2022-04-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4.28. 시행) 상가지역의 임대인, 상인 등 사업자 간 공존 및 상생을 증진하고 상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7호, 2021. 7. 27. 공포, 2022. 4. 28. 시행)됨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동지 내몰림) : 구도심이 변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이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과 지정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절차,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상생업무 등을 처리할 지역상생협의체 및 자율상권조합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상생협약의 체결절차 (제6조)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 단계로 체결해야 하는 상생협약은 상인·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과 상권 전문관리자·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 절차를 거쳐 상가 건물 관계자 간에 체결하도록 함 ②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 (제7조 및 제8조) -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변경으로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③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제9조) -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수는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등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제한받는 영업의 사전사업조정제에 관한 협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권 전문관리자 등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함	2022-04-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④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 (제10조 및 제11조) -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변경으로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4조) -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함 -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취지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도록 함 ⑥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19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에 상권의 디지털화,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지역특화상품의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사업완료 후 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⑦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20조 및 제21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 중에서 1명 이상의 전문교수원과 집합교육을 위한 강의실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⑧ 지역상생구역 내 금지·제한 업종 (제24조 및 제25조) -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연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 또는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을 공고하기 전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업·전문가 등의 의견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지역상권위원회는 영업 또는 시설의 금지·제한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금지·제한의 필요성,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⑨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26조) -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2.10.29. 시행 예정)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① 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②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동시에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밀봉된 축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광특구 지역이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 ④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과 간편조리세트를 추가	2022-04-2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기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73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 추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 ICT 기술 발전·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 (안 제9조, 제16조, 제23조, 제39조) -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정보통신공사 분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전자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형 발급으로 인해 재발급(분실, 훼손)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재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출력물을 사본으로 인정하도록 함 ②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안 제24조의2) -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금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③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53조제2항제3호) -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④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안 별표 2 및 별표 6) -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함 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10)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규정함	2022-04-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4/26(화)~5/20(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로 제출	
고용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안제7조제3호 및 안제117조제9호 신설) - 직업성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위탁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 변경 (안제59조 및 별표18)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에 따른 지도기준을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하고, 기술지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③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제96조의2 및 별표35타목·파목 신설) ④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일몰규정 폐지 (부칙 제30256호 제3조 삭제)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접근성 제고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부칙에서 정한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폐지 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안 별표3)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일부 업종을 추가하고, 작업의 위험성 및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수 및 창고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조정·강화	2022-04-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 (안 별표3 및 별표4)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축·토목 분야 자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500억원 이상에서 선임 될 수 있도록 규정 ⑦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 (안 별표28)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자격자 1명 이상을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을 정비 ※ 의견 제시기간 : 4/25(월)~6/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안 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 - 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 ②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안 별표11) - 자체심사·확인업체 시공현장에서 2명이상 동시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 (안 제161조 및 별지제62호·제63호서식)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하여 '법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대체 자료로 인정 ④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 (안 별표5) - 교육대상 구분을 삭제하고, 교육내용에 건설공사의 교육 및 시공절차 교육(1시간)과 주요 사망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예방교육(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교육(1시간)을 추가하여 내용을 개편 ⑤ 특수건강진단 등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 (안 별표24) -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4의 화학적 인자 중 유해인자 고유번호(Cas-No) 오류를 정비 ⑥ 전산누락 지도기관 처분규정 신설 (안 별표26)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부실지도 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발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⑦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개선 (안 별지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선임 등 보고서 서식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를 기재 항목에 추가하여 자격 여부 및 사업장을 쉽게 확인하도록 개정 ※ 의견 제시기간 : 4/25(월)~6/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2022-04-25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의9제2항제3호 신설)	2022-04-26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로 그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55조)	2022-04-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u>」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후 은행·증권사·보험사가 시설 등을 공유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복합점포가 활성화되고 있음 한편, 사모펀드 환매중단 조사 결과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복합점포 내 은행 및 증권사 간 책임 전가가 문제되면서 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복합점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신설)	2022-04-22
	•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9인)</u>」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금융당국의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시행 등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함 (안 제2조제11호 신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15조)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9조 및 제69조제1항)	2022-04-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④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2 신설) 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30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1조제2항) ⑥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32조제2항 신설) ⑦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상대방이 고령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안 제5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에 따른 2015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4제2항·제4항에서 제7항까지 신설 등)	2022-04-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된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는 과세될 수 있어 거래의 실질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현행법상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외국법인이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확인 또는 소득구분의 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가 외국법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8조의4제3항 및 제98조의6제3항 신설) ②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 (안 제98조의4제7항 및 제98조의6제7항 신설)	2022-04-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외 170인)」 국내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항의14 신설) ②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 (안 제4조제2항의9 신설) ③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 (안 제44조제4항 신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안 제44조의2제1항) ⑤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 (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⑥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 (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및 제6항) ⑦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안 제44조의10)	2022-04-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⑧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 (안 제44조의10제6항 신설) ⑨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 (안 제 44조의12 신설) ⑩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 (안 제 44조의13 신설) ⑪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 제76조제1항의6 신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외 170인)」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10제1항 신설) ②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 (안 제 44조의10제2항) ③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 (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신설)	2022-04-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관리책임은 매우 높은 반면, 신탁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신탁업자들이 수탁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결성까지 해놓고도 적절한 신탁업자를 찾지 못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을 개정(2021. 9. 17.)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신탁 의무가 부여되는 재산규모의 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좀 더 자유롭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이러한 신탁업자의 기피 문제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벤처투자조합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재산의 보관·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활발한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제1항)	2022-04-22
환경노동 위원회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관리 이외에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 등이 필요하므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과 같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2제4항 신설)	2022-04-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9인)</u>」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음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도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도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소 및 예약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 신설)	2022-04-25
	• 「<u>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0인)</u>」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이미 지급 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안 제12조의3 신설 등)	2022-04-2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5/2(월)	「행정입법 분석(제10호): 조세분야」 발간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 조세분야 행정입법의 법률의 취지 부합 여부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	
	5/6(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7호 발간	
국회도서관	5/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2호 발간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	
입법조사처	5/2(월) 14:00	초고령사회 대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 실태와 과제 - 김수봉 전 서정대학교 교수 -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원장	
	5/3(화) 14:00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검토 및 시사점 -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5/4(수) 14:00	제5차 '제20대 대선 결과와 쟁점' 연속간담회 -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 - 안용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미래연구원	5/2(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4호 발간 -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별첨1] 제396회 국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인사청문회 포함)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5/4(수)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정무위	5/2(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계속) -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재위	5/2(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위	5/6(금)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김인철)
과방위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부장관 이종호)
외통위	5/2(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국방위	5/4(수)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행안위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체위	5/2(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농해수위	5/4(수)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5/6(금)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환근)
복지위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복지부장관 정호영) - 법안 상정 등
	5/3(화) 미정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환노위	5/2(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5/4(수)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부장관 이정식)
국토위	5/2(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국토부장관 원희룡)
	5/3(화) 10:00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국토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5/3(화) 산회후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5/4(수) 10: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2(월) 14:00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허은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3(화) 14:00	성평등 추진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정춘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6(금) 14:00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3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4/29(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6호 발간	
국회도서관	4/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발간 -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	
예산정책처	4/27(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4월호 발간 -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산업·무역, 고용·인구, 가계소득·부동산시장·금융시장 동향 분석	
미래연구원	4/25(월)	「국제전략 Foresight」 제8호 발간 -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5(월) 09:30	등록임대 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5(월) 14: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6(화) 14:00	(글로벌 OTT의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	이상현,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파트너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소속변호사 | T. 02-316-1736 |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